

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
공제세액계산서

① 신청 법인 (투자법인)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공동투자법인

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	⑧ 대표자 성명	⑨ 생년월일

③ 투자 대상기업	⑩ 법인명	⑪ 사업자등록번호
	⑫ 대표자 성명	⑬ 생년월일
	⑭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⑮ 특수관계여부	여, 부
----------	------

④ 세액공제 계산내용

⑯ 주식 등 취득일	년 월 일	⑰ 주식 등 취득가액	⑱ 공제율	⑲ 세액공제금액 (⑰×⑱)
			5/100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①신청법인(투자법인)과 ②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③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한 법인으로서,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법인을 말합니다.
- ③투자대상기업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⑮ 특수관계여부란 투자기업간,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.